

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338
----------	------

2025년 11월 24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10월 18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: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11월 2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양천자원회수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며,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.
-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위탁 개요

- 위탁사무명: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
- 위탁기간: 3년('26.6.1. ~ '29.5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※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5.9.25.)
- 소요예산(안): 21,608백만원('26.6.~'29.5.)
(1차년도: 6,996백만원, 2차년도 : 7,201백만원, 3차년도 : 7,411백만원)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
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필요성
 - 생활폐기물의 반입·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.

3) 주요 위탁 사무

-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- 소각,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- 고압증기, 전력 생산 및 판매
-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·관리 일반사무처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(배출가스, 폐수 등)의 설계 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이내 유지
-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
(「폐기물관리법」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등)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4) 시설 개요

- 시설명: 양천자원회수시설
- 소재지: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(목동)
- 부지면적: 16,914m²
- 시설규모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/일(200톤/일 × 2기)
- 처리권역: 3개 자치구(양천, 강서, 영등포구)
- 주용도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소각 처리 및 소각열 회수를 통한 자원화
- 주요장비: 소각설비, 소각재처리설비, 연소가스처리설비 등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-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

	
위치도	외부 전경

5) 기대효과

-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, 기술력,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
-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(성과관리 기준 등)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
-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,

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,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('26.5.31.)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「민간위탁 조례」") 제4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관련 규정 검토

-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(이하 "시설"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²⁾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와 제6조³⁾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, 본 동의안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올해 10월 수립된 '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'⁴⁾을 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'에서 적정⁵⁾으로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⁶⁾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.

1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)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 양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및 열생산

3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4) 강남·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원회수시설과-10377. '25.10.2.).

5)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자원회수시설과)(조직담당관-10422, '25.9.25.).

2) 관련 예산 검토

- 시설 운영비는 고정비(비정산), 변동비(정산), 시설 보수비 등으로 구성되며, 이 중 본 동의안에는 1식으로 지급하는 고정비 내역을 포함하고 있음.

민간위탁금 운영원가(고정비)는 인건비와 고정경비를 포함한 용역원가에 운영비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3개년간 총 216억 8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, 1차연도는 69억 9천6백만원⁷⁾, 2·3차연도는 인상요율(2.92%)⁸⁾을 적용하여 각각 72억 1백만원과 74억 1천1백만원임.

<연간 운영원가 산출내역서(요약)>

(단위: 천원)

구 분	운영원가	구성비(%)	비 고
용역원가	인건비(직접인건비)	4,597,992	65.7
	고정경비(보험료, 복리후생비 등)	706,947	10.1
	순원가	6,214,764	75.8
	일반관리비(9%)	477,210	6.8
	이윤(10%)	578,215	8.3
	운영비용	6,360,364	90.9
	부가가치세	636,036	9.1
	위탁 운영원가	6,996,400	100.0

<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>_사업별설명서 p.402~405

과목구분	2025년 본예산	2026년 예산안
민간위탁금	○ 고정비(비정산) 양천자원회수시설 = 5,539,981천원	○ 고정비(비정산) 양천자원회수시설 = 6,393,179천원
	○ 변동비(정산) = 8,907,565천원	○ 변동비(정산) = 9,186,389천원
	증감사유 - '26년 양천, 강남 자원회수시설 위탁 공모 실시에 따른 원가 산정 결과 반영	
민간위탁 사업비	○ 양천자원회수시설 = 2,550,000천원	○ 양천자원회수시설 = 2,200,000천원
	증감사유 - 시설 노후화(양천 29년)에 따른 수관 교체, 소각로 보수 등 노후 시설 정비	

-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→ 시의회 보고(동의) → 시의회 의결 →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.
- 양천·강남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용역 보고서
-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(기계부문) 인상률과 시설 인력 기술등급 배치 현황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

3)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요약

-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의 시설 평가 종합 점수는 81.72점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(23.12.)의 재계약 기준 점수(75점)를 초과하였음.

폐기물 소각량, 소각로 가동률, 배출가스 관리 등 주요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, 지도점검 이행 노력과 시민 만족도 관련 사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
〈평가 결과 종합점수〉

평가 영역	평가 범주	평가 지표	지표 배점	득점
공통 사무	1. 사업인프라	1-1. 조직 및 인력 운영	4.00	2.88
		1-2.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	8.00	6.14
		1-3. 사회적 가치 기여	5.00	4.06
	2. 사업활동	2-1. 사업계획 집행수준	13.00	9.36
		2-2. 사업활성화 개선노력	6.00	4.08
개별 사무	3. 사업성과	3-1. 폐기물 소각량	11.25	9.90
		3-2. 소각로 가동률	11.25	10.05
		3-3. 배출가스 농도	22.50	20.25
		3-4. 대외적 우수사례성과 창출 수준	3.00	2.10
	4. 지도점검 이행노력	4-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	3.00	3.00
		4-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	3.00	2.04
사용자 만족도	5. 만족도 제고노력	5-1. 청렴 체감도 조사	5.00	4.36
		5-2.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	5.00	3.50
합 계			100.00	81.72

○ 조직 및 인력 운영:

비교적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, 일부 업무는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기술·관리 인력 간 업무 중복 및 전문성 편차로 인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.

○ 폐기물 소각량:

목표가동일 달성을 위해 가동 중지일을 최소화하는 것은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과도한 가동률 증가는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 가동 중지일과 반입 성상 관리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균형

있게 확보할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(가동률 '23년 100.6%, '24년 98.9%, '25년 89.3%).

- 개선 사항:

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관계와 갈등관리가 중요하여 시설 내 녹색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.

다만, 최근 3년간 센터 내 문화프로그램 관련 주민 불편 접수 및 개선 실적이 없고 시민 만족도 정량 조사 지표가 없어 주민 체감 성과 반영이 미흡하므로 향후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별도 지표로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노후화 및 위험 작업 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.

4) 종합 의견
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 운영, 폐기물 소각량, 주민 만족도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개선 방안을 마련과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
○ 3개년 운영원가

구 분	금 액(원)	비 고
1차년도	6,996,400,000	
2차년도	7,200,694,000	인상율: 2.92% 적용
3차년도	7,410,954,000	인상율: 2.92% 적용
총 사업비(3년)	21,608,048,000	

※ 인상요율은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(기계부문) 인상을과 시설 인력 기술등급 배치 현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

○ 연간 운영원가

(단위 : 원/년)

구 분		운영원가	구성비	비고
용역원가	인건비	직접인건비	4,597,992,134	65.7%
		일용인건비	0	0.0%
		소계	4,597,992,134	65.7%
	고정경비	인적보험료	449,050,275	6.4%
		복리후생비	171,369,046	2.4%
		산업안전보건관리비	47,276,707	0.7%
		교육훈련비	3,404,960	0.0%
		회의비	2,600,000	0.0%
		소모품비	12,788,483	0.2%
		급량비	5,039,802	0.1%
		여비교통비	3,000,000	0.0%
		통신비	2,114,509	0.0%
		교통보조비	9,531,818	0.1%
		기타경비	770,908	0.0%
		소계	706,946,508	10.1%
	순원가	5,304,938,643	75.8%	인건비 + 경비
	일반관리비(9%)	477,210,477	6.8%	순원가 x 9%
	이윤(10%)	578,214,911	8.3%	(순원가+일비) x 10%
운영비용		6,360,364,031	90.9%	순원가+일비+이윤
부가가치세		636,036,403	9.1%	운영비용 x 10%
위탁 운영원가		6,996,400,434	100.0%	운영비용 + 부가가치세
위탁 운영원가		6,996,400,000		백원단위 절사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38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자원회수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며, 위탁기간이 '26. 5. 31.자로 만료될 예정임
- 나.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 ('26년 6월 1일 ~ '29년 5월 31일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필요성

- 생활폐기물의 반입·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- 소각,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- 고압증기, 전력 생산 및 판매
-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·관리
일반사무처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(배출가스, 폐수 등)의 설계
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
-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(폐기물관리법 등
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)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라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(목동)
- 부지면적 : $16,914m^2$
- 시설규모 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/일(200톤/일 × 2기)
- 처리권역 : 3개 자치구(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)

- 주 용 도 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
- 주요장비 : 소각설비, 소각재처리설비, 연소가스처리설비, 발전설비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 ('26.06.01. ~ '29.05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(비정산비 기준) : 21,608백만원('26. 6.~'29. 5.)

(1차년도 : 6,996백만원, 2차년도 : 7,201백만원, 3차년도 : 7,411백만원)

아. 기대효과

-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, 기술력,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
-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(성과관리 기준 등)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
-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,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

자.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5.09.25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

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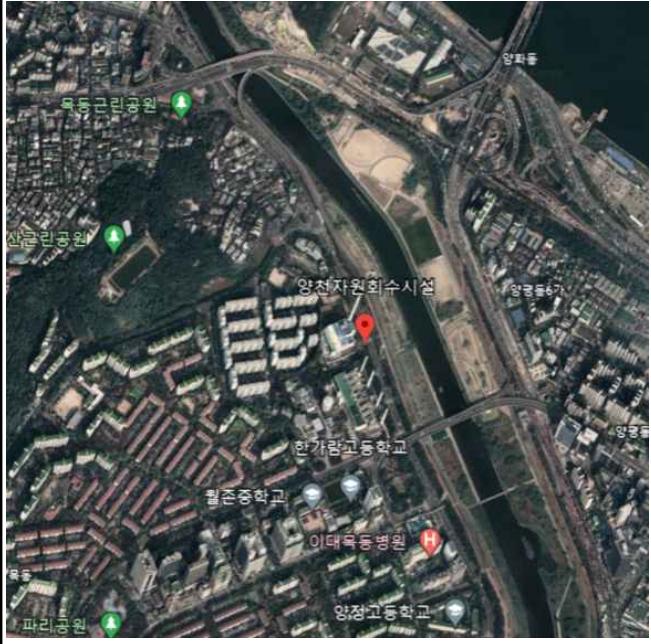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이수연(☎2133-3682)

- 시설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(목동)

	
시설 위치	시설 전경